

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1. 10.

담양군의회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문화재의 보존·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 : 「담양군 문화재 보호관리 조례」

나. 문화재의 구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지정문화재 : 국가지정문화재, 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
- 향토문화유산 : 향토유형문화유산, 향토무형문화유산

다. 지정문화재 현황, 관리실태 등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
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권
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마. 화재 및 도난방지, 문화재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~8조)

바.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9~23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1. 10.~11. 1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**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**”를 “**담양군 문화재 보호관리 조례**”로 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 중 “**담양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**”를 “**「문화재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,**”로, “**향토문화 보존 및**”을 “**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, 민족문화의**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**정의는**”을 “**뜻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**지정문화재**”라 함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,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**향토문화유산으로**”를 “**문화재로**”로, “**향토문화유산을**”을 “**문화재를**”로 한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 : 문화재청장이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2. 전라남도지정문화재 : 전라남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3. 문화재자료 :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② “향토문화유산”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제외하고 인위적,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, 예술적, 학술적,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자료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향토유형문화유산 : 건조물, 전적, 서적, 회화, 조각, 고고학자료, 성곽, 명승지, 동·식물자생지,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

2. 향토무형문화유산 : 연극, 음악, 무용, 공예기술, 의식,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

③ “역사문화환경”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·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.

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3조)제9항 중 “**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**”를 “**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**”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
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(제4조부터 제7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지정문화재

제4조 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인가·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(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남도지정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,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)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3조 및 「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25조에 따라 담양군 소재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화재 및 재난방지 등) ① 군수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,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

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정문화재 교육의 지원) ① 군수는 군민들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문화재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기록의 작성·보존) 군수는 지정문화재의 보존·관리와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향토문화유산

제10조(중전의 제5조)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제19조(중전의 제14조)제2항 중 “제6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</u> <신 설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담양군 관 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향 토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</u> 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<u>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 ① “<u>향토문화유산</u>“ 라 함은 문화 재보호법에 의거 “문화재“로 정 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,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,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 적, 예술적, 학술적, 경관적 가 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학자료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	<u>담양군 문화재 보호관리 조례</u> <u>제1장 총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문화재보 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4조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하여 <u>민족문화를 계승하고, ----- ----- 군민의 문 화적 향상을 도모하고, 민족문 화의 ---.</u> 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 ① “지정문화재”라 함은 우리 역 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요성,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화유 산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.
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향토유형문화유산 : 건조물, 전적, 서적, 회화, 조각, 고고학 자료, 성곽, 명승지, 동·식물자 생지,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 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 존에 필요한 것

2. 향토무형문화유산 : 연극, 음 악, 무용, 공예기술, 의식, 음식 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 한 것

<신 설>

<신 설>

1. 국가지정문화재 : 문화재청장 이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 재

2. 전라남도지정문화재 : 전라남 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 정한 문화재

3. 문화재자료 : 제1호나 제2호 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 화재 중 도지사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

② “향토문화유산”이라 함은 제 1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제 외하고 인위적, 자연적으로 형 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 적, 예술적, 학술적, 경관적 가 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학자료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향토유형문화유산 : 건조물, 전적, 서적, 회화, 조각, 고고학

<신 설>

② “보호구역”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<신 설>

자료, 성곽, 명승지, 동·식물자
생지,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
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
존에 필요한 것

2. 향토무형문화유산 : 연극, 음
악, 무용, 공예기술, 의식, 음식
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
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
한 것

③ “역사문화환경”이란 문화재
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·문
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
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
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
다.

④ -----

----- 문화재로 -----

----- 문화재를 ----

-----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담양군수
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국가의
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
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

<신 설>

<신 설>

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정문화재

제4조 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

보호)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인가·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(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남도지정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,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)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3조 및 「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25조에 따라 담양군 소재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

<신 설>

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화재 및 재난방지 등) ① 군수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,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6조(지정문화재 교육의 지원)

① 군수는 군민들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문화재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위원회설치 및 운영) ① ~

⑧ (생 략)

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
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
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(생 략)

제5조(지정) ① (생 략)

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 제1항
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
산,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
지정한다.

제6조(지정기준) ① 제5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형문화유
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
기준은 별지 제1호와 같다.

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지원
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
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
조할 수 있다.

제7조(기록의 작성·보존) 군수는
지정문화재의 보존·관리와 변경
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
존하여야 한다.

제3장 향토문화유산

제8조(위원회설치 및 운영) ① ~

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 「담양
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
례」-----
-----.

제9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

제10조(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2항-

-----.

제11조(지정기준) ① 제10조 ----

-----.

②·③ (생 략) <u>제7조</u> ~ <u>제13조</u> (생 략) <u>제14조</u>(경비보조 등) ① (생 략) ② 군수는 <u>제6조</u>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향토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호·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<u>제15조</u> ~ <u>제18조</u>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 <u>제12조</u> ~ <u>제18조</u> (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 <u>제19조</u>(경비보조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제11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20조</u> ~ <u>제23조</u> (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
---	--